

1. 개정이유

간호사·전문간호사·간호조무사의 면허와 자격, 업무 범위, 권리와 책무, 수급 및 교육,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「간호법」이 제정(법률 제20445호, 2024. 9. 20. 제정, 2025. 6. 21. 시행)됨에 따라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간호사·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의 인용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규정의 「의료법」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「간호법」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개정하려는 것임. (안 제12조제1항제1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고용노동부령 제 호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 중 “「의료법」”을 “「간호법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) ①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1. 「의료법」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. ~ 4. (생 략) ② (생 략)	제12조(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) ① ----- ----- -----. 1. 「간호법」----- -----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